



☎ 463-8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 FAX : 02-566-6426

(담당 이동욱, 02-1577-5500)

CMS업무팀 - 152

2015. 3. 18.

수 신 CMS 이용기관 대표자
참 조
제 목 CMS 출금이체 신청내역 정비를 위한 이용기관 조치사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출금이체정보 조회서비스 본격실시('15. 6월예정)에 따른 고객 민원 최소화를 위해 CMS 출금이체 신청내역 정비를 위한 이용기관의 조치사항을 안내 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조치 사항(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참가기관 임의해지 내역 반영 및 재등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CMS 출금이체 청구가 종료된 고객의 출금이체 신청내역 해지

추진 계획

- 이용기관 프로그램 개발 : '15. 3 ~ 4. 15
- 참가기관 임의해지 내역 반영 및 재등록 : '15. 4. 16* ~
- * 참가기관별 자체일정에 따라 순차적 적용



붙 임 : CMS 출금이체 신청내역 정비를 위한 이용기관 조치사항 1부. 끝

금융결제원 e사업실장

(붙임)

출금이체 신청내역 정비를 위한
CMS 이용기관 조치사항

2015. 3.

금융결제원 e사업실(CMS업무팀)

1. 개 요

출금이체정보 조회서비스 본격실시(이하 ‘조회서비스’)에 따른 고객민원 최소화를 위해 고객의 출금이체 신청내역 정비를 위한 이용기관 조치사항을 안내함

2. 이용기관 조치사항

가. 참가기관 임의해지 내역 반영 및 재등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개 요

참가기관(은행 및 증권사)이 1년이상 출금요청이 없는 고객의 출금이체 신청내역을 임의해지 하는 경우 이용기관은 해당내역을 확인하여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고객의 출금이체 신청내역을 재등록

□ 임의해지 사유

— 출금이체정보 조회서비스 본격실시에 따른 고객민원* 최소화

* 예 : 이용기관과의 계약이 수년전에 종료되었음에도 이용기관이 고객의 출금이체 신청내역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출금이체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등록내역 확인 시 민원발생

□ 관련 근거 : 『CMS 이용약관』

제24조(납부자의 출금이체신청서 접수절차 등)

⑩ 참가기관(은행 등)은 1년 이상 출금이체가 없는 납부자계좌의 출금이체신청내역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 조치 사항 : CMS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

- 변경된 CMS 전산설계서(붙임 참조)에 의거 EB11파일 수신 및 반영
 - 참가기관이 전송하는 출금이체신청 파일(EB11)에 신청구분이 **임의해지(7)**인 경우 이용기관은 해당 고객의 해지내역을 프로그램에 반영*
 - * 참가기관이 전송하는 EB11에 신청구분이 해지(3) 및 임의해지(7)인 경우 참가기관은 해당 **고객의 출금이체 신청내역을 해지처리** 하므로 이용기관은 해당 고객으로부터 자금수납 불가
- 임의해지 내역 중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고객은 **출금이체 (재)신청**
 - 이용기관은 임의해지 내역 중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고객은 출금이체신청 파일(EB13)에 수록하여 재신청
 - * 참가기관이 **임의해지(7)한 출금이체 신청내역은 이용기관이 동일 납부자번호로 재등록 가능**(고객이 참가기관에 요청하여 해지(3)한 출금이체 신청내역은 동일 납부자번호로 재등록 할 수 없음)

나. CMS 출금이체 청구가 종료 · 변경된 고객의 출금이체 신청내역 해지

□ 개요 : 이용기관은 출금동의를 얻은 고객과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출금수단 및 계좌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 등록된 고객의 출금이체 신청내역을 주기적으로 해지

□ 해지 근거 : 『CMS 이용약관』

제5조(이용기관의 의무)

- ⑩ 직접접수*기관은 **출금이체 청구가 종료된 해지고객의 ‘해지데이터’** 를 반드시 결제원 앞 전송·처리하여야 한다.
*고객의 출금이체신청서를 이용기관이 직접 접수하여 출금이체정보를 등록하는 것

제24조(납부자의 출금이체신청서 접수절차 등)

- ⑥ 직접접수기관은 납부자의 **출금이체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해지한 후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 해지 방법 : 고객의 해지내역을 EB13 파일에 수록하여 결제원에 전송
 - * EB13 파일생성 및 송신방법 관련 문의는 해당 고객관리 프로그램업체에 문의

3. 향후 추진 일정

- 이용기관 프로그램 개발 : '15. 3 ~ 4. 15
- 참가기관 임의해지 실시: '15. 4. 16(예정)* ~
 - * 참가기관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 실시

- 별 첨 : 1. CMS 전산설계서 변경내역 1부
2. 이용기관 조치사항 관련 Q&A 1부. 끝.

(별첨 1)

CMS 전산설계서 변경 내역

□ 은행 및 기관 접수 (EB11, EB12, EB13, EB14)

1) Header Record

항번	항 목	MODE	LENGTH	비 고
1	Record 구분	A	1	Header Record 식별부호 "H"
2	일련번호	N	8	"00000000"
3	기관코드	AN	10	.은행↔센터 구간:은행식별코드 ※ VAB↔센터 구간:은행식별코드
4	FILE 이름	AN	8	
5	신청 일자	AN	6	"YYMMDD"
6	FILLER	AN	87	

2) Data Record

항번	항 목	MODE	LENGTH	MAC	비 고
1	Record 구분	A	1		Data Record 식별부호 "R"
2	Data 일련번호	N	8		"00000001" ~
3	기관코드	AN	10		.은행↔센터 구간:이용기관식별코드 ※ VAB↔센터 구간:이용기관식별코드
4	신청일자	AN	6		납부자의 서비스 신청일자
5	신청구분	AN	1		신규:"1", 해지:"3", 임의해지:"7"
6	납부자번호	AN	20		이용기관에서 부여한 납부자식별번호
7	은행점코드	AN	7		
8	지정출금계좌번호	AN	16	*	"-"는 생략
9	예금주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AN	16		개인 : "생년월일"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해지(신청구분 "3")는 SPACE 처리가능
10	취급점코드	AN	4		신청서접수점코드
11	자금종류	AN	2		출금자금의 종류
12	처리결과	결과코드	A	1	처리불능:"N"
		불능코드	AN	4	처리불능시 코드
13	FILLER	AN	1		
14	전화번호(핸드폰)	AN	12		"-"는 생략
15	FILLER	AN	11		

(주) "5. 신청구분" : 은행접수(EB11) 내역의 해지("3")와 임의해지("7") 구분

- 참가기관이 **임의해지**한 고객 원장은 이용기관이 동일 납부자번호로 재등록 요청시 **정상처리**
해지 한 고객 원장은 이용기관이 동일 납부자번호로 재등록 요청시 **오류처리**

(별첨 2)

CMS 이용기관 조치사항 관련 Q&A

2015. 3.

금융결제원 e사업실(CMS업무팀)

Q. 고객의 출금이체 신청내역은 어떤 경우에 해지를 하면 되나요?

- A. CMS 이용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시행령 제10조 및 CMS 이용약관 제24조 제①항에 의거 고객의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출금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기관이 렌탈비 수납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출금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출금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기존 고객의 출금이체 신청내역은 해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납부방법을 변경할 때도 기 등록한 출금이체 신청내역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예 : 계좌 자동이체에서 가상계좌 입금으로 변경)

만약, 고객이 출금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이용기관은 기 등록한 출금이체 신청내역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좌를 출금이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 : OO은행에서 XX은행으로 출금계좌를 변경하거나, OO은행 123계좌에서 OO은행 456계좌로 변경)

Q. 고객의 출금이체 신청내역은 어떻게 해지하나요?

- A. 이용기관은 CMS 전산설계서에 따라서 EB13(출금이체 신청) 파일에 고객의 해지내역을 수록하여 결제원에 전송하셔야 합니다.

이용기관이 해지 대상 고객을 고객관리 프로그램에서 삭제만 하는 경우 출금이체 신청내역은 해지처리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기관은 결제원에 EB13 파일을 전송하여 출금이체 신청 내역을 해지한 후 고객관리 프로그램에서 고객내역을 삭제하셔야 합니다.

EB13 파일 생성 및 전송 방법은 해당 고객관리 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참가기관이 1년이상 출금요청이 없는 고객의 출금이체 신청내역을 임의해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참가기관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출금이체 조회서비스 본격 실시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CMS, 지로자동이체, 펌뱅킹 및 기타 CMS 등 1년이상 출금요청이 없는 모든 출금이체 신청내역을 임의해지 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용기관이 고객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기 등록된 출금이체 신청내역을 주기적으로 해지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Q. 참가기관이 임의해지 하는 경우 고객에게 LMS가 발송되나요?

- A. 참가기관이 임의해지 하는 경우 해당 고객 앞 LMS 발송은 제외됩니다.